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6. 3.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정현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총칙을 규정(안 제1장)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물놀이 안전관리 대비를 규정(안 제2장)

- 대비계획, 안전시설 정비·확충 및 관리지역 전수조사, 위험지역 설정·게시(안 제4조~제7조)

다. 안전관리요원 모집 및 교육·훈련을 규정(안 제3장)

- 안전관리요원 임무, 모집선발·자격기준 및 교육·훈련(안 제8조~제10조)

라.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을 규정(안 제4장)

- 대응계획,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점검반, 상황보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비밀유지(안 제11조~제15조)

마.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지도·감독을 규정(안 제5장)

- 안전관리요원 배치, 근무·운영시간, 안전장비, 지도·감독(안 제16조~제19조)

바. 예산을 규정(안 제6장)

- 예산 확보, 사무의 위탁(안 제21조~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관련부서 : 시민안전관

라. 입법예고 : 2025. 3. 5. ~ 3. 10. (5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매년 여름철 하천과 계곡 등에서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남양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내용은 하절기 전 전수조사를 토대로 내실 있는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또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선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현장 감시와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물놀이 이용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조례로 명문화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없음.

■ 참고자료 1 :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 4곳 조례 제정

순번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자	담당부서
1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2018. 09. 19.	안전총괄과
2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2018. 12. 18.	안전총괄과
3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2014. 02. 27.	시민안전과
4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2021. 07. 14.	관광진흥과

■ 참고자료 2 : 남양주시 물놀이 안전시설 현황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장소(37개소)

번호	행정복지센터	개소 수	비고
1	진접·오남	10	왕숙천 : 9개소, 봉선사천 : 1개소
2	화도·수동	22	구운천 : 21개소, 수산천 : 1개소
3	진건·퇴계원	3	왕숙천 : 2개소, 용암천 : 1개소
4	호평·평내	1	사능천 : 1개소
5	금곡·양정	1	남양주 한강시민공원 : 1개소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현황

번호	행정복지센터	계	인명구조함	경고표지판
	계	97	28	69
1	진접·오남	30	10	20
2	화도·수동	55	14	41
3	진건·퇴계원	4	1	3
4	호평·평내	2	0	2
5	금곡·양정	6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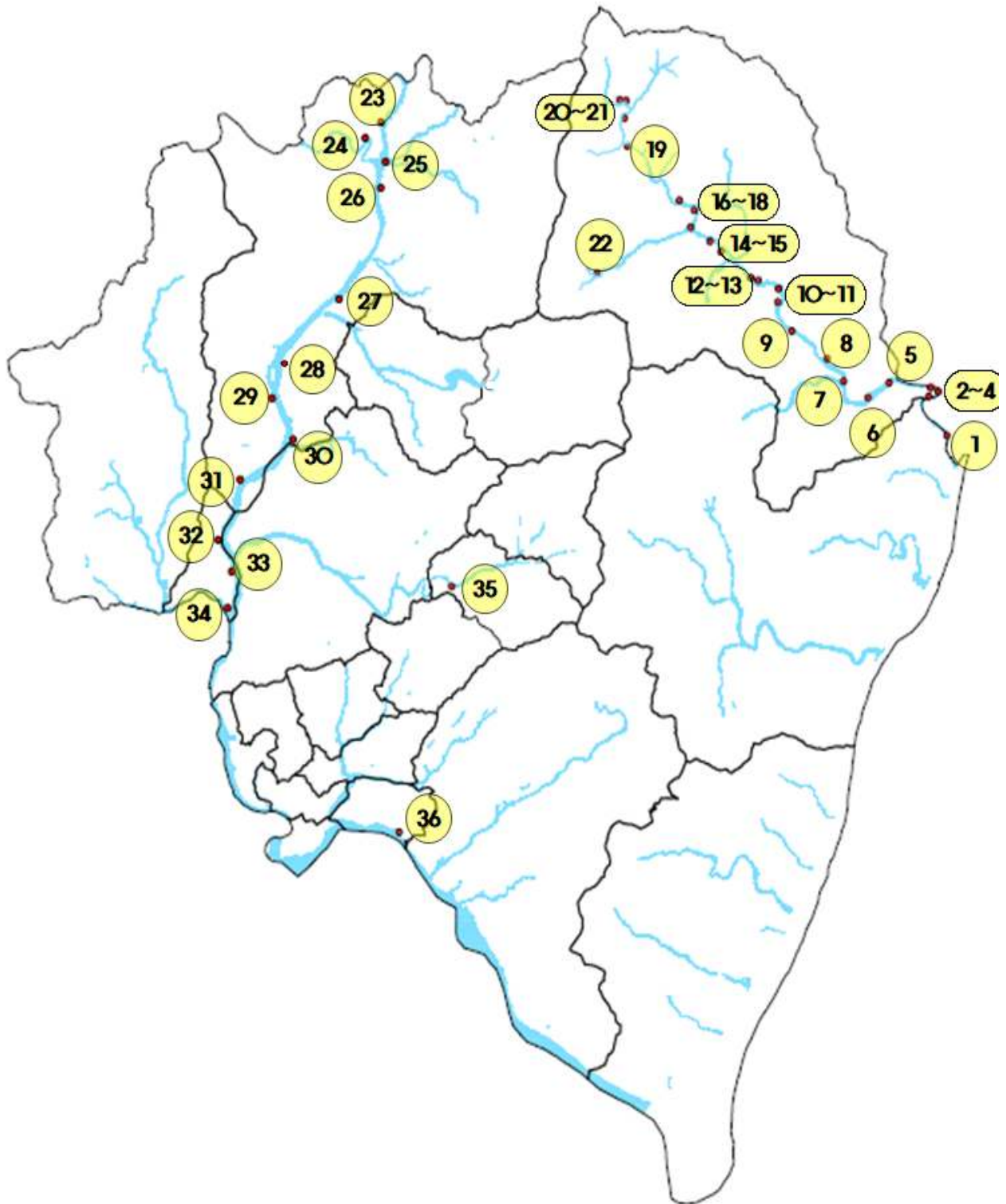
※ 자료 : 2025년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참조

■ 참고자료 3 : 남양주시 물놀이 안전관리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 : 12개 물놀이 관리지역(경기도 보고 및 행정안전부 등록)
 위험구역은 적색으로 표시

번호	하천명	대표주소	인명구조함	위험표지판
계			28	69
1	구운천	화도읍 구암리 217-4 (내구운교 앞 황새바위)	2	3
2	구운천	수동면 송천리 3-12 (구오류동교, 모꼬지캠프 앞)	-	1
3	구운천	수동면 송천리 2-23 (블루스카이 캠프 앞)	-	1
4	구운천	수동면 송천리 2-21 (나이스캠프 앞)	-	1
5	구운천	수동면 송천리 11-18 (신발교 좌우측)	-	1
6	구운천	수동면 입석리 31 (청수개미보,청수개미 민박집 앞)	1	4
7	구운천	수동면 운수리 1-5 (신촌교 삼천리연수원 주변)	2	4
8	구운천	수동면 입석리 242 (황수터보, 해솔마을 입구)	-	1
9	구운천	수동면 운수리 93-1 (수동교, 감리교연수원)	2	2
10	구운천	수동면 운수리 381-53 (수동초교, 운수교)	1	5
11	구운천	수동면 운수리 386 (세월교 좌우측)		2
12	구운천	수동면 입석리 503 (물골안유원지)	2	3
13	구운천	수동면 입석리 531-1, 지둔리 4-17 (물골안유원지 상류, 한옥마을 입구)	-	2
14	구운천	수동면 외방리 528-1 (지둔소교)	-	1
15	구운천	수동면 지둔리 229-6 (지둔2교)	-	1
16	구운천	수동면 수산리 60-3 (수산교)	1	1
17	구운천	수동면 수산리 1-5 (도림개유원지)	1	1
18	구운천	수동면 내방리 24 (복지회관, 무지개어린이집 인근)	-	1
19	구운천	수동면 수산리 579 (여울목, 비월교, 산돌농원 입구)	1	1
20	구운천	수동면 내방리 237-6(몽골문화촌 가족쉼터 공중화장실)	1	2
21	구운천	수동면 내방리 265, 268-2(몽골문화촌 뒤 비금산장 인근)	-	2
22	수산천	수동면 수산리 369-2 (수산아카데미 정문입구)	-	1
23	왕숙천	진접읍 부평리 466 (평촌교 하류)	1	2
24	봉선사천	진접읍 부평리 산 99-31(봉선사천 능내교, 엔스베이글 앞)	1	1
25	왕숙천	진접읍 부평리 514-4 (오두교(세월교), 5163정비대대 입구)	1	3
26	왕숙천	진접읍 부평리 630-8 (부평교 및 수중보, 동부센트레빌 113동 측면)	1	3
27	왕숙천	진접읍 장현리 268-3 (장현대교 상류 수중보)	1	1
28	왕숙천	진접읍 장현리 31-24 (왕숙천 징검다리)	1	1
29	왕숙천	진접읍 내각리 337-5 (알동산 징검다리)	1	3
30	왕숙천	진접읍 내곡리 498-1 (임송교 상부 수중보)	1	1
31	왕숙천	진접읍 내곡리 169-1 (내곡교 하류 수중보)	1	3
32	왕숙천	진접읍 내곡리 561-7 (임송교 자전거도로 개방화장실 옆)	1	2
33	왕숙천	퇴계원읍 퇴계원리 62-1 (퇴계원 체육공원 인근)	1	1
34	왕숙천	퇴계원읍 퇴계원리 130-19(쌍용예가@ 측면)	-	1
35	용암천	퇴계원읍 퇴계원리 157-5(세월교, 퇴계원배수펌프장 인근)	-	1
36	사능천	평내동 527-11 (약대물목장 인근)	-	2
37	한강	삼패동 630 (남양주 한강시민공원)	3	3

○ 물놀이 안전관리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표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21조(예산 확보)
 -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
 -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

나. 비용 발생 요인

- 물놀이지역 안전시설(인명구조함) 정비 및 확충
-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요원 배치 운영 예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물놀이 안전시설(인명구조함) 37개소 유지·보수 및 신규시설 확충
- 물놀이지역 12개소 안전관리요원 배치 운영을 위한 용역비
- ※ 2025년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였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역 관리로 전환하고자 함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총 소요액		456	465	475	484	493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인명구조함 관리)	사무관리비	10	10	10	10	10
예방 및 복구사업(안전관리자 배치)	사무관리비	446	455	465	474	483

○ 세부 산출 내역

- 인명구조함 유지·보수 : $(200,000\text{원} \times 37\text{개소}) + \text{신규설치} \approx 10\text{백만원}$
- 안전관리자 배치 : $(\text{물놀이지역 } 12\text{개소} \times \text{근무자 } 4\text{명} \times 2,420,000\text{원} \times 3\text{월}) + \text{재비용} \approx 446\text{백만원}$

※ 2025년 하반기 단순노무원 노임단가 적용, 법정근로시간을 고려하여 A팀(월~목), B팀(금~일)으로 운영

다. 재원조달방안

-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 :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예방 및 복구사업(안전관리요원 배치) : 재난관리기금 활용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시민안전관 박석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출		456,477	465,406	474,514	483,804	493,281	2,373,482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예방 및 복구사업		446,477	455,406	464,514	473,804	483,281	2,323,482
재원 조달		456,477	465,406	474,514	483,804	493,281	2,373,482
자체 수입	소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지방세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446,477	455,406	464,514	473,804	483,281	2,323,482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